

2013
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

우리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!

# 2013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세요

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: [onedclick.mest.go.kr](http://onedclick.mest.go.kr)

복지로 :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신청기간 : 2013년 2월 18일(월) ~ 3월 8일(금)

신청자격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대상자, 기타 저소득층  
신청내용 : 고교 학비, 학교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(PC 및 인터넷통신비)

신청방법 : 학부모가 아래 ①,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

① 온라인 :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(onedclick.mest.go.kr) 또는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

※ 검색포털에 "교육비 원클릭" 또는 "복지로" 검색

※ 온라인 신청시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

② 방문신청 : 학생(또는 학부모)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

제출서류 :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 등  
소득·재산 증명서류

신청방법 : 신청자 가구원(학생의 부모, 형제·자매)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

가구별 "소득인정액"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

※ 올해 신청하여서 지원을 받은 학생은

내년에 다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



교육과학기술부  
MINISTRY OF EDUCATION, SCIENCE AND TECHNOLOGY

보건복지부  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경기도교육청  
KERIC

한국교육진흥원  
KIERIS

경북교육청  
KERIC

한국교육정보개발원  
KIEIP

##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절차

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교육비를 신청합니다.

온라인 신청화면 [복지로 접속시 처음 화면]	· 복지포털시스템 →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 (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접속한 경우 생략)
공인인증 및 개인 정보활용 동의 [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접속시 처음 화면]	· 개인정보활용과 교육식별정보수집에 동의한 후, 공인인증서로 로그인
서비스 선택	· 복지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려는 서비스(신규·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)를 선택 (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접속한 경우 생략)
가족사항 등록	· 가족구성원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직업 등을 등록함 · 자녀사항을 등록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나타남 (자녀등록시 학교선택은 필수)
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	·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가구구성원 정보, 서비스신청 정보 등을 확인 (앞에서 선택한 서비스가 표시됨)
소득 / 재산 신고	· 가족구성원의 소득, 재산, 부채사항을 작성 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)
가족정보제공동의	· 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 등(금융/신용/보험정보) 제공에 동의 · 신청인은 본인과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동의 · 만 20세 이상 가족은 본 화면에서 가족정보제공을 동의할 경우에만 계속 신청이 가능 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)
교육정보화 지원 신청	· 교육정보화 지원(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) 신청서를 작성
추가서류 제출	· 추가로 제출할 서류(전·월세 계약서 등)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제출 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)
신청하기	·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(이후부터는 신청서 수정이 불가능함.)
신청완료	· 신청서 제출연료를 확인

※ 준비사항 : 공인인증서, 가족구성원 정보(성명, 주민번호 등), 전·월세 계약서 스캔 또는 촬영파일 등

## 교육비 지원기준 안내

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# 지원항목

#### ■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

학교 급	학년	고교 학비		교육정보지원원
		입학금	학교운영 지원비	
초	1	0	0	PC
	2	0	0	0
	3	0	0	0
	4	0	0	0
	5	0	0	0
	6	0	0	0
중	1	0	0	0
	2	0	0	0
	3	0	0	0
고	1	0	0	0
	2	0	0	0
	3	0	0	0

무 상 급 식

무 상  
교 육

#### ■ 교육비 지원 내용

- 고교 학비 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- 급식비 : 초·중·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: 연 60만원 이내 지원
- 단, 무상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
- 단, 단위학교 예산 범위내 순위별 차등지원
- 교육정보화지원 : 가구별 컴퓨터 1대,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(유해차단 서비스 포함) 월 19,250원 이내 지원



### 신청자격

순위	자격 구분	보유 자격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지원	
						PC	인터넷 (유해차단)
1	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	국민기초생활 수급자	0	0	0	0	0
		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0	0	0	0	0
		차상위 대상자	0	0	0	0	0
4	소득인정액 기준		130% 이하	130% 이하			
5	담당 추천		0	0	0		

\*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\*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더라도, 시·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.

#### 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

##### ①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
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
- 차상위 대상자

구분	내용
① 차상위 자활 대상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시업에 참가하는 자
②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
③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	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(아동)수당을 받는 자
④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	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
⑤ 우선돌봄차상위 가구	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가구

#####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가구원수	2인	3인	4인	5인	6인	
최저	100% 이하	98	127	155	184	212
생계비 환산기준 (만원)	120% 이하	117	152	186	220	255
	130% 이하	127	164	202	239	276
	135% 이하	132	171	209	248	287
	140% 이하	137	177	217	257	297
	155% 이하	152	196	240	285	329
	200% 이하	195	253	310	367	424
	260% 이하	254	328	403	477	551

③ 담당추천 : 1~4 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,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, 담당교사의 추천을 거쳐 별도 선정

##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안내

소득인정액은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

###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
$$\text{소득인정액} = \text{소득평가액} \textcircled{1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 \textcircled{2}$$

- ①: 가구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 
 ②: (각종 재산<sup>③</sup> - 기본 공제액<sup>④</sup> - 부채<sup>⑤</sup>) × 월 소득환산율<sup>⑥</sup>

※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, 0으로 처리

### ③ 각종 재산의 유형

일반재산	금융재산	승용차
토지, 건축물(주택), 전·월세보증금, 2,500cc 미만 자동차 등	예금, 적금, 주식, 보험 등	2,500cc 이상의 승용차

### ④ 기본 공제액(기본 재산액)

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(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)

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5,400만원	3,400만원	2,900만원

※ 대도시: 특별시, 광역시의 "구" / 중소도시: 도의 "시", 세종시 / 농어촌: 도의 "군"

### ⑤ 부채

부채는 일반재산,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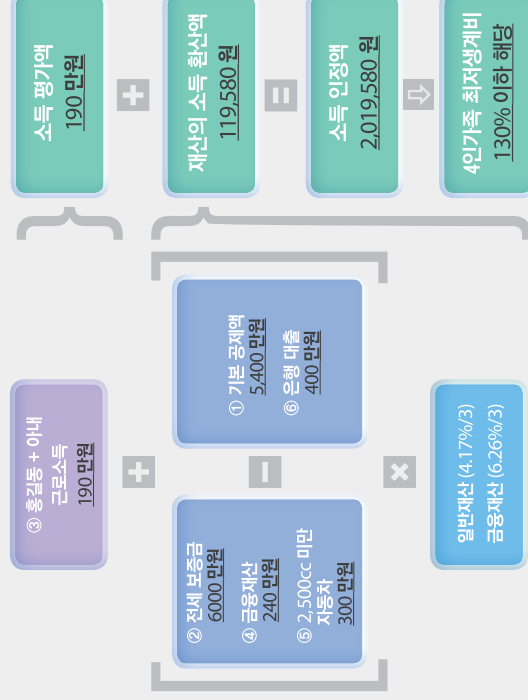
### ⑥ 월 소득환산율

재산종류별로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

일반재산	금융재산	승용차
4.17%/3	6.26%/3	100%/3

### 소득인정액 계산예시

홍길동 가족은 4인 가구로 ①대도시에 ②전세로 거주하며(보증금 6,000만원), 홍길동은 S회사에 근무하고 ③월급 110만원) 아내는 T회사에서 근무하고(③월급 80만원) 있다. ④저축 140만원과 보험 100만원, ⑤1,600cc 중고차(상당가액 300만원)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은행에 ⑥4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이다.



### 〈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산식〉

$$\{(6,000\text{만원} \textcircled{2} + 300\text{만원} \textcircled{5} - 5,400\text{만원} \textcircled{1} - 400\text{만원} \textcircled{6}) \times 4.17\% \textcircled{3}\} + (240\text{만원} \textcircled{4}) \times 6.26\% \textcircled{3} = 119,580\text{원}$$

※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계산 과정을 대폭 축약하였습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워크북 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?**

-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. 학부모님이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.

**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?**

- 신청기간(2.18.~3.8.) 동안 학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 
 ※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-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온라인,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 (우편, 팩스 신청은 불가)

**매년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?**

- 과거에는 매년 학부모님께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. 올해부터는 '1회 신청' 만으로도 매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- 따라서 올해 신청해서 지원을 받은 학생은 내년에도 다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자동으로 심사하게 됩니다.
- 다만 올해 심사에서 탈락했거나, 담임 추천으로 지원 받은 학생은 내년에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**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?**

-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전·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,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,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  
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**직년에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?**

- 직년에 지원 받으셨더라도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기초, 한부모, 차상위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

**예전과 같이 학교로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?**

-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.

**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(또는 2013년에 입학할 학교)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나요?**

-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**우리 아이는 특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입학금,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 이번에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?**

- 입학금,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,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**고교 교과서비, 교복비, 체험학습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**

- 일부 시·도교육청에서는 고교 교과서비, 교복비, 체험학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 이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, 학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4대 교육비와 함께 심사·지원합니다.

**우리 가구의 소득·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?**

- 해당 시·군·구에서 구세청,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·형제·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.

**소득·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**

- 학생의 부모와 형제·자매입니다. 성인(만 20세 이상)인 형제·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**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?**

- 학교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며, 심사 결과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.
-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